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3. 13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3. 13

다. 상정일자 : 제 11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 1차 총무위원회(2003. 3. 20)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윤여철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사유

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간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「2003년2월28일」 까지 인것을 「2003년8월31일」 까지로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초과 현원 신분유예기간 연장 : 2003. 2. 28 → 2003. 8. 31

3. 관련법령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. 부칙 3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부칙 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초과현원 신분 유예기간에 대한 자구수정 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